JDI FOCUS
No. 139
2012. 6. 29

Brief

‘생물자원전쟁’ 나고야 의정서 채택에 따른 제주의 대응전략

제주발전연구원 강 진 영 책임연구원

Contents

Ⅰ. 들어가며
Ⅱ. ABS 핵심 쟁점 및 대응 방향
Ⅲ. 제주의 대응 전략

제주발전연구원
Jeju Development Institute

Ⅰ. 들어가며

■ 1993년 12월에 발효된 생물다양성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이하 CBD)[1]의 목적은 ①생물다양성[2]의 보전, ②생물다양성의 지속가능한 이용, ③생물다양성 및 유전자원에 의해 발생하는 이익의 공평한 배분임

■ 생물다양성협약의 생물다양성 및 유전자원에 의해 발생하는 이익의 공평한 배분은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Access and Benefit Sharing of genetic resources, 이하 ABS)"로 표현할 수 있으며, ABS 실현을 위해서 나고야 의정서[3]가 탄생

– 나고야의정서는 총 50개 당사국이 비준·가입·수락·승인 후 90일째 되는 날 발효되며, 2011년 10월 현재 64개국이 서명한 상태임[4]

– 나고야 의정서는 전문 27개항, 본문 36개 조문 및 1개의 부속서로 구성되어 있고 본문의 조항들은 성격에 따라 크게 7개의 범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아주 적은 일부 조항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조항들이 의무사항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고 있음

■ 나고야 의정서 채택에 따른 ABS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나고야 의정서 범정부 대책(2011.11)',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과 이익공유(ABS) 법률' 등 국가차원의 다양한 후속대책이 추진중임

– 생물다양성과 관련한 생물자원의 시장규모는 약 7,600억$(약 800조원)로 보고되고 있음(이중 의약 5,460억$, 천연물약 1,000억$, 종자 300억$, 원예품목 1,400만$, 산업바이오 723억$, 화장품 120억$로 보고됨)

– 바이오산업이 연평균 15%내외 급성장하는 우리나라는 국내 이용 생물자원의 70%이상을 해외에서 들여오고 있고 생물자원 사용대가로 국외로 지급되는 로열티가 약 1조5천억원에 달하고 있음

– 해외생물자원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나고야 의정서가 발효되면 그 영향이 심각할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에 ABS에 대해서 국가차원 뿐만 아니라 지역차원에서의 대응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 따라서 본 고에서는 나고야 의정서 채택 이후의 국제질서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ABS 및 나고야의정서 핵심 쟁점과 분쟁사례 그리고 국내외 동향을 살펴봄으로써, 제주지역 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Ⅱ. ABS 핵심 쟁점 및 대응방향

1. ABS 핵심 쟁점

■ ABS의 핵심 쟁점은 크게 네 가지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적용범위에 대한 사항으로 적용범위는 다시 시간적 공간적 차원, 그리고 파생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으며, 그러한 측면에서 개도국은 적용범위를 가능한 넓게 설정하여 보다 많은 이익공유를 실현하고자 한 반면 선진국은 그 반대 입장임

1) http://www.biodiv.org/world/parties.asp
2) 생명체의 다양성과 생명체가 살아가는 서식처의 다양성을 총칭하는 것으로서 유전자(gene) 다양성, 종(species) 다양성, 생태계(ecosystem) 다양성을 포함
3) 정식명칭은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과 이용으로부터 발생한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관한 나고야의정서'로서, 일본 나고야에서 개최된 제10차 생물다양성 협약 당사국총회의 총회 폐막일(2010.10.30)에 채택된 생물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ABS)를 규정한 의정서임
4) 우리나라는 환경부장관이 UN방문을 계기로 서명(2011.9.20)

② 둘째, 이익공유에 대한 사항으로 생물유전자원을 활용하여 발생한 이익을 공유하는 주체가 생물유전자원의 원산국인지 이를 제공한 제공국인지에 대한 입장차이가 보임

③ 공정하고 투명한 접근절차에 대한 사항으로 선진국은 공정하고 투명한 접근 절차를 마련하여 내외국인 차별을 금지하고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제도정비를 요구한 반면 개도국은 이에 대해 소극적이며, 또한 선진국은 비영리 목적의 연구활동 등에 대해서는 접근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고 요구한 반면 개도국은 이에 반대함

표1 ABS협상의 핵심 쟁점

쟁점	주요내용	
	선진국	개도국
적용범위	■ 의정서 발효 후 ■ 자국 영토내에 소재 파생물 제외	■ 의정서 발효 이전 ■ 남극 등 자국 영토 밖에 소재하는 자원도 포함 ■ 파생물 포함
이익공유	■ 사적 계약	■ 입법을 통해 이익 공유
접근절차	■ 투명한 접근절차를 마련 ■ 관련 정보를 접근자에게 충분히 제공	■ 접근 절차 마련에 소극적 ■ 비영리목적의 연구활동이나 긴급 사태 등에 대한 간소화된 접근절차 적용에도 소극적
준 수	■ 종래의 사법제도 활용	■ 보다 강력한 감시, 추적제도 도입 주장

자료출처 : 정성춘, 제10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의 주요내용: 「나고야 의정서」를 중심으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10)

④ 의정서가 요구하는 내용을 보다 확고히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으로, 선진국은 기본적으로 기존 법질서를 통해 이행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개도국은 새로운 강제 시스템을 도입하여야 한다고 요구함

■ 각 쟁점들에 대해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의견대립이 심하여 COP10[5]에서도 협상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으나 선진국의 개도국 재정지원 약속이 제시되면서 극적으로 나고야 의정서가 채택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일반적으로 시간적 차원에서는 나고야 의정서가 발효된 이후 취득된 유전자원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됨

- 그러나 시간적 차원의 적용범위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의 여지를 남겨놓고 있어서 향후 추가적인 합의 도출이 요구되는 것으로 제시됨[6]

② 공간적 차원에서는 자국 영토를 벗어난 공해상 혹은 남극 등지에 존재하는 유전자원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파생물'이라는 용어 자체가 적용범위를 규정하는 조항에서 삭제되어 파생물은 명시적으로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됨

- 나고야 의정서 조항의 해석 여하에 따라 파생물도 포함될 여지가 있으므로, 이 부분도 향후 국제적인 논쟁거리가 될 가능성이 많음

③ 의정서는 유전자원과 관련된 전통지식도 이익공유의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전통지식을 이용하여 상업적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전통지식의 권리자와 이익을 공유하는 등 의정서가 요구하는 절차를 준수해야 함

5) 제10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6) 정성춘, 제10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의 주요내용: 「나고야 의정서」를 중심으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10)

• 따라서 유전자원에 대한 발굴의 중요성과 더불어 전통지식에 대한 발굴과 DB화가 중요함

④ 나고야 의정서는 적용대상 유전자원을 활용하여 연구개발을 하고 이를 상업적으로 이용하여 이익을 얻을 경우, 해당 유전자원을 제공한 국가와 상호 합의된 조건(MATs: Mutually Agreed Terms)에 따라 공평하게 이익을 공유하여야 함

• 해당 유전자원에 대한 권리가 토착민 및 지역공동체(ILCs: Indigenous and Local Communities)에 있을 경우 이와 이익을 공유하여야 하며, 유전자원과 관련된 전통지식을 이용하여 얻은 이익에 대해서도 이를 보유한 토착민 및 지역공동체와 이익을 공유하여야 하기 때문에 지역차원에서의 대응이 중요함을 나타냄

⑤ 의정서는 유전자원에 접근할 경우 자원 제공국으로부터 사전통보승인(PIC: Prior Informed Consent)을 얻도록 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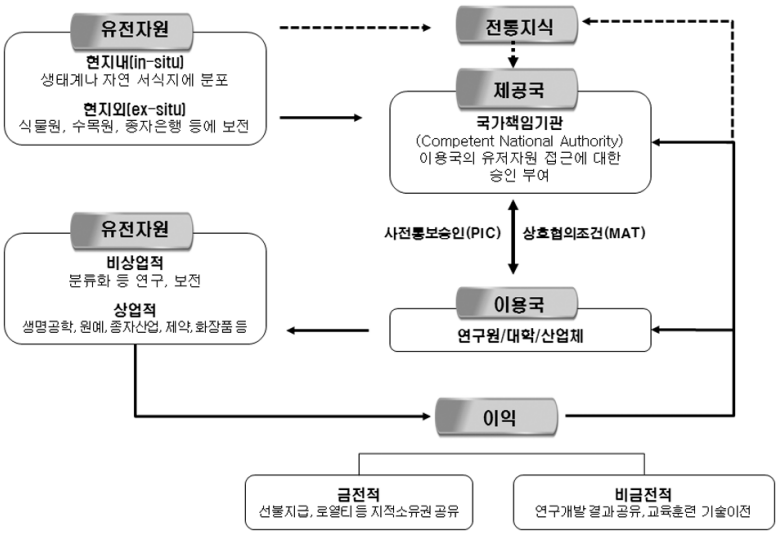

그림1 나고야의정서 체계

■ 이러한 내용으로 채택된 나고야 의정서 채택의 의미는 다음과 같음

① 생물자원 부국들의 권리의식의 상승과 생물자원 부국의 협상력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② 나고야 의정서가 채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핵심 조항에 대한 해석상의 대립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③ 우리나라는 생물유전자원의 해외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각국의 입법 동향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적법한 절차를 통해 생물유전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과 더불어 국내 생물유전자원에 대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여야 함

•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우리나라 고유의 생물자원이 무엇이며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작업과 더불어 정부부처간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우리나라 생물유전자원의 불법적인 유출과 사용을 억제하며,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정비하여야 할 것임

2. 주요 국가의 ABS 대응 방향

■ 생물다양성협약(CBD) 가입국들은 가이드라인에 따라 국내법 체계를 수립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왔으며, 현재까지 ABS와 관련된 법을 제정한 국가들의 경우 생물다양성 보호에 관한 법률 내에 이에 관한 사항들을 대부분 포함하는 경우가 많음

- ABS 규정을 제정하기 위해서는 생태계 수준에 따른 관리, 유전자원의 관리, 접근 및 이익공유와 함께 시행이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ABS 정책 및 지역사회/주민의 권리가 포함된 국가수준과 지역사회 수준, 유전자원을 받는 국가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나라가 ABS로 인해 가장 큰 이익을 얻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대표적인 국가는 다음과 같음[7]

- 라틴아메리카: 브라질, 콜롬비아, 에콰도르, 멕시코, 페루, 베네수엘라
- 아시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인도, 중국
-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 콩고민주공화국, 남아프리카공화국
- 오세아니아: 호주, 파프아뉴기니

■ 이들 국가는 높은 문화적 다양성과 함께 세계 동·식물종의 70%이상을 보유한 국가로, 대부분 개도국으로 구성된 생물다양성부국 협상그룹(Like-Minded Megadiverse Countries, LMMC)을 결성하여 공동으로 대응을 모색함

1) 인도

■ 인도는 2002년 생물다양성법의 제정을 통해 유전자원의 조기 국제규범화, 국제인증제도의 도입, 광범위한 ABS국제 규범의 적용, 원산지 출처의 공개 등을 주장함

- ABS의 적용범위를 유전자원, 상품, 파생물과 전통지식의 범위까지 포함되어야 함을 주장
- ABS 관련법으로는 생물다양성법(Biological Diversity Act, 2002 제정), 생물다양성규칙(Biological Diversity Rule, 2004 제정), 특허법(Patent Act, 2005 개정) 등이 있음
- 주요 제도로는 접근 승인(Approval) 제도 및 특허 관련 제도 등이 있음

■ 인도의 주요 기관은 NBA, SBBs, BMCs 등 3단계 기관으로 구성됨

- National Biodiversity Authority(NBA) : 외국인/외국기관이 인도의 생물자원 또는 관련 전통지식에 대한 접근을 신청하는 경우 이의 처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기관으로서 외국인/외국기관은 NBA의 승인(Approval)을 취득하여야 함
- State Biodiversity Boards(SBBs) : 내국인이 상업적 목적으로 인도의 생물자원 또는 관련 전통지식에 접근하고자 하는 경우 이의 처리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주정부의 부서
- Local Biodiversity Management Committees(BMCs) : 지역 생물다양성의 보전, 지속가능한 이용, 생물다양성 및 생물다양성과 관련된 지식의 연대기 등을 정리하고 출판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기관

7) 환경부, 나고야의정서 가입 타당성 분석 및 후속협상 대응에 관한 연구(2011.12)

2) 호주

- 호주는 UNEP-WCMC[8]가 선정한 주요 생물다양성 부국 중 하나로 연방정부 및 6개의 주정부와 2개의 자치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관할 내의 생물유전자원에 대한 권한을 행사하므로 어느 관할 지역의 생물유전자원에 접근하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 및 절차가 다른 특징을 보임
- 호주의 ABS관련 정책 및 규범은 2005년부터 운영중으로 의정서와 ABS CH개발에 초점을 두고 시스템을 개발하고 운영중에 있음
- ABS 관련 주요 제도로는 생물유전자원 접근허가제가 있음
  - 접근허가제는 상업적 또는 잠재적 상업적 목적과 비상업적 목적 모두 허가제가 적용되며, 생물유전자원 표본을 채취하기 위해 연방정부 지역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허가증(written permission)'을 발급받아야 함

3) 일본

- 일본은 유전자원 이용국의 입장에서 국내·외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오고 있으며, 기본 입장은 생물유전자원 이용자와 제공자의 양자체제에서 합의에 기초하여 생물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용과 이익공유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임
  - 대내적으로는 국내 기업·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한 ABS 인식제고 및 자발적인 의무준수 역량의 강화
  - 대외적으로는 생물유전자원 제공국의 능력배양을 지원하는 정책을 펼침으로써 이용자-제공자 사이의 상호 신뢰관계의 구축으로 ABS시스템이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고 있음
  - 또한 바이오산업을 국가의 중요 전략산업으로 육성함
- 일본의 ABS 대응 전략에 있어서 법제도 측면에서는 CBD/ABS를 직접 규율하는 국내법은 없으며, 자국내 생물자원은 기존 법체계하에서 각 부처가 관리하고 있음

4) EU

- EU는 ABS논의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협상과정에 참여하였는데, 대부분의 회원국이 생물유전자원 이용국임
  - 간소한 접근절차, 법적 투명성, 평등한 접근 절차 등을 강조함
  - ABS국제레짐 개발협상에 개발도상국 참여확대, 토착민 및 지역공동체의 법적·합리적·공식적 참여 주장함
  - ABS 인식증진 및 자원제공국들과의 신뢰구축을 위한 노력을 강조함
- ABS 관련 정책 추진현황
  - 1998년도 ABS 추진을 위한 적절한 다자체계, 생물유전자원 제공국과 이용국간 양자협력 체계, 현지 자원탐사 및 접근을 위한 국가전략의 수립 등 유럽공동체에 생물다양성전략 ABS 3가지를 권고함
  - 2002년 "경제개발협력을 위한 EC 생물다양성 행동계획" 수립

8) UNEP WCMC : United National Environment Programme World Conservation Monitoring Centre

– 2003년 12월 "생물다양성협약 하의 생물유전자원에 대한 접근과 이익공유에 대한 EC의 본 가이드라인 이행" 커뮤니케이션 채택

5) 한국

■ 나고야 의정서 채택 후 ABS에 대비하여 법 · 제도적인 측면과 협력부분 그리고 생물자원 확보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음(표 2참조)

■ 나고야 의정서의 인식 확대를 위해 정보서비스센터 운영을 시작으로 전문가 포럼개최 등을 통해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ABS의 대응 방안으로 법 · 제도적인 부분을 보완하고, 더불어 국내외적으로 협력을 위한 노력과 생물자원확보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2 나고야 의정서 채택 후 우리나라 대응 현황

일 자	추 진 내 역
2011.1	'생물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 공유(ABS)' 전담 정보서비스센터(Help Desk) 운영
2011.4	나고야 의정서 대응책 마련을 위한 전문가 포럼 개최
2011.5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국무회의 심의 · 확정
2011.5	국립생물자원관-서울대학교 약학대학 협력 MOU 체결
2011.5	「남남협력(South-South Cooperation) 국제 전문가회의 개최
2011.6	한국생물지 발간
2011.7	독도 자생식물 모니터링 조사 및 유전자분석을 통한 NCBI[9] 등록 추진
2011.9	「생물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나고야의정서」서명
2011.11	나고야 의정서 범정부 대응책 수립
2011.12	'한반도 고유종 총람' 출간
2012.1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회 통과

3. ABS 분쟁 사례

■ 남아공 부시맨의 식욕억제제인 전통 식물 '후디아(Hoodia)'분쟁

– 후디아 고르도니(Hoodia gordonii)는 장기간 수렵에 나갈 때 배고픔을 잊게 해주는 것으로써, 후디아를 복용하면, 며칠간 아무것도 먹지 않아도 평상시와 같이 수렵을 계속해도 신체의 상태를 양호하게 유지시켜 주는 효과로 아프리카 남부에 거주하는 부시맨족(산족)이 전통적으로 사용해 옴

– 남아공 국립연구기관인 과학 · 공업연구평의회(CSIR)가 1997년 후디아(Hoodia)성분 중에 식욕억제 효과를 가진 생리활성물질을 분리하는데 성공하여 특허 취득

– 이를 영국 제약회사(Phytopharm)에 특허사용권을 부여하였고, Phytopharm사는 먼저 Pfizer사와 이후에 Unilever에게 특허실시권을 재부여했으나 결국 양사는 모두 특허실시권을 포기함

9) PIC(Prior Informed Consent) : 사전통보승인을 얻기 위해 당사국들은 사전통보승인을 제공하기 위한 투명하고 법적으로 확실한 국내 제도를 정비해야 하며, 또한 토착민 및 지역공동체가 PIC 발행 권한을 가질 경우 이를 국내법적으로 명확히 규정하여야 함

- 남아공의 변호사는 '전통지식을 사례없이 가로채는 것은 생물해적행위(Biopiracy)라고 주장하여 부시맨족에게 사례를 지급하도록 남아공 과학 · 공업연구평의회(CSIR)와 영국 제약회사(Phytopharm)에 압력을 가함

- 현재 칼리할리 사막에서 합법적으로 후디아(Hoodia)를 수확하는 모든 기업은 부시맨족에게 사용료(벌채료)를 지급하고 있는 실정임

■ 일본 화장품회사 시세이도(資生堂) 분쟁

- 일본 화장품회사 시세이도는 인도네시아에서 야생 허브를 이용한 화장품 원료 등에 관한 51건의 특허를 취득하였으나, 현지 비정부민간단체(NGO)가 ABS 기준에 저촉된다고 주장

- 실제로는 위법한 이용이 없었지만, 시세이도는 기업 이미지가 손상될 우려가 있어 2002년 특허를 철회함

■ 안데스의 산삼이라 불리는 페루 '마카(Maca)' 분쟁

- 마카(Maca)는 페루가 원산지인 식물로서 안데스의 산삼 또는 천연 Viagra로 일컬어지고 있는데, 페루 유채과에 속하는 뿌리식물로 적도지역 부근의 해발, 4,000m이상의 고지대이고, 일사량이 강하고, 일교차가 큰 조건에서 자라는 식물임

- 2001년 미국 특허청이 PureWorld Botanicals사에게 마카(Maca) 추출물인 MacaPure에 대해 특허를 인정하였으나, 이에 대해 페루 농민들은 생물해적행위(biopiracy)라고 반대운동을 시작함

- 이후 페루에서는 전통적으로 계승해온 동 · 식물을 해외로 반출시켜 의약품 등을 개발할 경우에 페루정부와 토착 · 지역사회와 일정한 비율로 이익 공유하도록 하는 법률이 제정됨

- 현재 일본 회사와 페루 토착 · 지역사회의 농민과 계약을 체결하여 관련 제품을 판매하고 있지만, 향후 나고야 의정서가 발표된 후에는 페루정부의 국내법 정비에 따라 사전통보승인(PIC)[9] 및 상호 합의한 계약(MAT)[10] 등을 통해 이익을 환원해야 할 가능성도 존재함

■ 조류 독감(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분쟁

- 세계에서 가장 조류독감 감염자가 많았던 인도네시아 정부에서는 백신제조에 필요한 조류독감 바이러스를 2007년부터 국외반출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하였고, 이를 통해 세계보건기구(WHO)에 바이러스 제공을 거부함

- 이는 선진국 기업이 백신개발을 통하여 이익을 올리고, 선진국 국민은 백신을 통해 조류독감으로부터 건강을 지킬 수 있지만, 백신 가격이 높아 인도네시아 국민이 접종할 가능성이 없는 등 자국에 혜택이 없다는 이유로 반출을 금지함

- 2010년 10월에 나고야 의정서가 채택된 이후 인도네시아는 나고야 의정서에 따라 신약개발에 따른 저렴한 백신 공급 등의 이익공유가 될 수 있다면 세계보건기구(WHO)에 인체 병원체를 제공할 수도 있다는 견해를 표명함

10) MAT(Mutually Agreed Term) : MAT에는 ① 분쟁해결방법, ② 이익공유조건, ③ 제3자 사용조건, ④ 목적의 변경을 포함하도록 해야 함

Ⅲ. 제주의 대응전략

- 향후 ABS 관련 협의과정에서 많은 분쟁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되기 때문에 ABS 핵심 쟁점과 주요 내용, 그리고 국내외 대응 동향과 분쟁 사례 등을 살펴봄
- 현재까지 ABS 대응은 중앙정부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 향후 ABS 분쟁은 지방 중심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ABS 대응은 지방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지역에서의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중앙정부에서는 지방에 대해서 특히, 제주지역을 대상으로 ABS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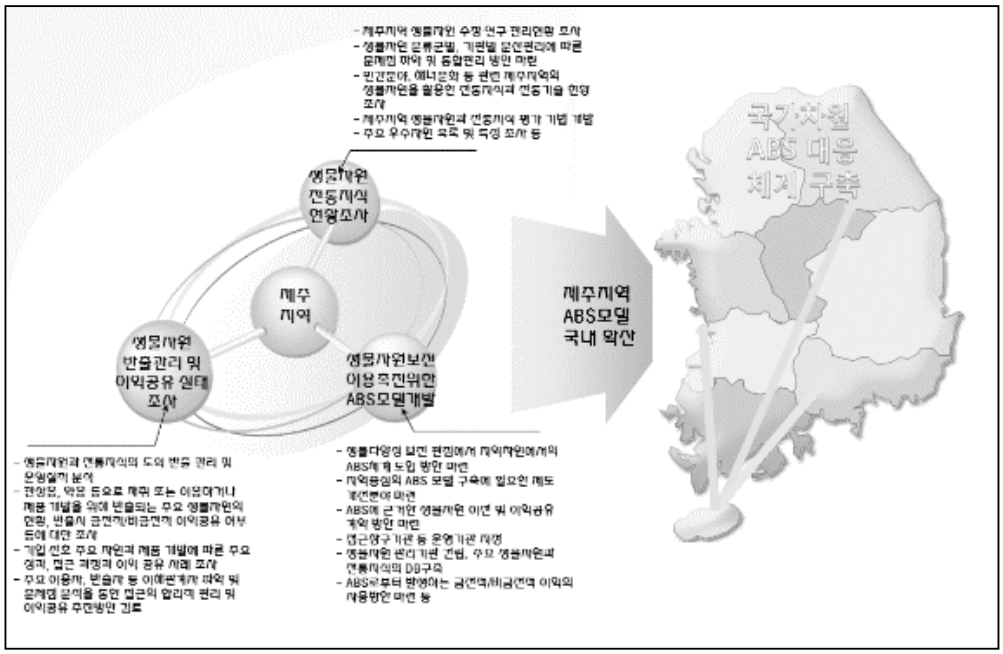

그림2. 제주지역 및 국가차원에서의 ABS 대응 연계 모식도

① ABS 대응과제로 숨어있는 생물유전자원과 전통지식의 현황 조사 및 DB구축이 필요함

- 독도 자생식물 조사를 통한 고유종 발굴에서 보여주듯이 제주지역에는 총 63개의 섬이 있으며, 이중 55개의 무인도에 있어서는 사람들의 간섭이 많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여 이러한 섬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우리나라 고유의 생물유전자원을 발굴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기존 사업에서 조사·발굴된 전통지식에 대해서 재정리하고, 각 마을 또는 지역에서 구두로 전해지거나 민간요법으로 전해지는 내용을 추가적으로 정리하고 자료화함이 필요함
- 이와 더불어 제주지역 생물자원 수장·연구관리 현황의 조사 및 생물자원 분류군별, 기관별 분산관리에 따른 문제점 파악 및 통합관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서 제주생물유전자원 확보전략 수립과 제주생물자원의 산업적 활용기반 마련을 사업목표로 하는 제주생물종다양성연구소와 제주도 인문·사회·자연과학에 관한 전문적 연구 및 지원, 분야 간 협동 연구를 목적으로 설립한 제주학연구센터 그리고 기타 한라산연구소, 민속자연사박물관 등의 활성화와 연계를 활용할 필요가 있음

② 생물자원 반출관리 및 이익 공유실태에 대한 조사가 필요함

- 기존 생물자원과 전통지식의 도외 반출에 대한 조사와 더불어 이에 대한 관리 및 운영실적에 대해서 조사하고 분석하여야 함
- 또한 관상용, 약용 등으로 채취 또는 이용하거나 제품 개발을 위해 반출되는 주요 생물자원의 현황과 반출시 금전적/비금전적 이익의 공유 여부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함
- 그리고 기업이 선호하는 주요 자원과 제품 개발에 따른 주요 성과와 접근 과정에서 이익을 공유한 사례가 있는지, 그리고 주요 이용자, 반출자 등 이해관계자의 파악 및 문제점 분석을 통한 접근의 합리적 관리 및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추진 방안 등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함

③ 정부와 제주가 합동으로 ABS 이행 지역모델 개발과 제주에 국립생물자원관 설립 등이 필요함

- 생물다양성 보전 관점에서 지역차원에서의 ABS체계 도입 방안을 마련하고 지역중심의 ABS 모델 구축에 필요한 제도상 개선분야를 마련하여야 함
- 또한 ABS에 근거한 생물자원 이전 및 이익공유를 위한 계약 방안과 ABS로부터 발생하는 금전적/비금전적 이익의 사용 방안에 대한 마련이 필요함
- 그리고 다양한 제주의 식물상과 동물상에 대한 자료 및 소장품에 대해서 홍보 또는 전시할 수 있는 공간 및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의 역할이 가능한 제주국립생물자원관 설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④ 제주지역에서의 ABS모델을 국내로 확산시킴으로써 국가차원의 ABS대응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제주지역은 한반도의 최남단에 위치하고 한반도와 격리되어 있는 섬이기 때문에 생물자원 반입반출에 대한 실태 조사에 유리함
- 또한 섬 중앙에는 한라산과 그 주변에는 368개의 오름이 위치하고 있으며, 해안구 및 사구와 현무암 단애가 형성되어 있어 다양한 식물과 동물이 서식하고 있기 때문에 ABS이행 지역모델로 적합하다고 판단됨
- 국가차원의 ABS 대응전략은 결국 각 지역에서의 생물유전자원과 전통지식을 DB화함으로써 국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음
- 이러한 측면에서 제주지역은 ABS 지역모델로서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며, 구축된 제주지역의 ABS 지역모델을 타 지역으로 확산시키는 것은 곧 ABS에 대한 국제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참/고/문/헌

- 대외경제연구원,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ABS) 국제규범에 대한 고찰(2003)
- 박용하, 생물다양성협약의 체계적인 대응을 위한 제언, 한국환경정책 · 평가연구원 환경포럼(2007)
- 박원석, 나고야의정서와 지적재산, Policy Focus(2011)
- 오윤석, 유전자원의 보호에 관한 생물다양성협약과 Bonn Guideline고찰, 지식재산논단
- 오윤석,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나고야의정서의 채택과 향후 전망 분석, 지식재산연구(2011)
- 육근형, 생물다양성협약(CBD) Global Biodiversity Outlook 3발간, 해양국토21(2010)
- 이관규 · 김준순 · 정화영, 유전자원의 접근과 이익공유(ABS) 사례연구를 통한 국내 산림 · 임업분야 대응과제 고찰, 한국임학회지(2011)
- 이석우, 생물유전자원 수출입의 새로운 패러다임, 나고야의정서, 산림, vol. 4(2011)
- 장남정, 김민경, 사라져 가는 전통지식이 보배된다-전라북도 생물자원 전통지식 활용의 필요성, 이슈브리프(2012. 6)
- 정성춘, 제10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의 주요내용「나고야 의정서」를 중심으로, KIEP 오늘의 세계경제(대외경제연구원)(2010)
- 환경부, 보도자료
- 환경부, 생물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나고야 의정서(2011)
- 환경부, ABS Guidebook(2009)

※ 본 내용은 연구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제주발전연구원의 공식적인 견해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내용 문의 : 제주발전연구원 강지영 책임연구원(726-5960 / nechang@jdi.re.kr)

• 지난 호는 www.jdi.re.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제주발전연구원 포커스 제139호 2012년 6월 29일
발행처 : 제주발전연구원 **발행인** : 양영오

690-16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연로 253
Tel.064-726-0500 Fax.064-751-2168
www.jdi.re.kr